

우루과이라운드 농산물협상과 양계산업 대책방안

—대한양계협회—

1. UR 농산물협상의 배경

가. UR농산물협상 배경과 의의

금년말 타결을 목표로 서두르고 있는 우루과이라운드 진전상황이 알려지면서 그 중 농축산물협상 과정에 대하여 상당한 반응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 이미 「우루과이라운드」는 지난 1986년 9월 남미의 우루과이에 있는 폰타델 에스테라는 도시에서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즉, 가트회원국 각료들에 의하여 시작되었다. 여기에서 라운드는 협상의 뜻이고, 남미 우루과이에서 시작되었기 때문에 「우루과이라운드」라고 불린다.

최근 대 농민 홍보활동이 강화되면서 왜 이렇게 중요한 일을 지금에 와서 터뜨리느냐고 불만을 나타내고 있으나, 협상이 어떻게 타결이 될지는 아직도 미지수이다. 그러나, 우루과이라운드 농산물 협상은 나라마다 특수한 농업생산 여건의 차이로 높은 보호장벽을 쌓아온 농산물에 있어서도 자유화를 가트의 공식의제로 삼을 만큼 세계 무역환경은 빠르게 변하고 있음을 실감케 하고 있다. 「우루과이라운드」를 계기로 최근 관련 부처에서는 우리나라 농업이 국제화 시대에 적응하여 나가기 위한 대책

수립과 필요재원의 확보에 부심하고 있다.

우루과이라운드 협상 배경설명에 앞서 가트 즉,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이라고 하는 국제협약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가트는 제 2차 세계대전이 끝난 직후 전쟁발발의 주요원인의 하나였던 경제선진국들의 시장확보나 식민지쟁탈 등 보호주의를 완화하고 자유경제원리에 입각한 국제무역체제와 세계경제질서를 확립함으로써 세계자원의 합리적 활용과 완전고용, 그리고 인류의 복지증진 등을 목적으로 미국·영국 등 제 2차 세계대전의 전승국들이 주축이 되어 1948년 1월에 출범시킨 국제협약이다. 현재 우리나라를 포함한 96개 정회원국과 잠정가입국 및 사실상 적용국 29개국을 합하여 125개 회원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가트는 위의 창설목표를 실현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주요 원칙을 규범화하고 있다.

첫째는 가트의 회원국기는 어느 한 회원국에 대하여 무역상의 우대조치를 취한 경우 다른 회원국에 대하여도 동일한 우대조치를 즉각적이고도 무조건적으로 취해야 한다는 최혜국 대우 원칙이다.

둘째는 수입상품에 대하여 조세와 규제 등의 면에서 국내상품과 차등을 두어서는 아니된다는 내국

민 대우 원칙이다.

셋째는 수입상품에 대하여 국내산업보호를 위한 관세만을 부과하되 그 관세도 협상을 통하여 점진적으로 인하해 나가며 가트에 약속한 세율 이상으로 관세를 인상하지 않겠다는 양허세율 준수의 원칙이다.

넷째는 관세 이외의 수입쿼타 등 수입수량제한의 비관세장벽을 설정하지 않는다는 비관세장벽 설정 억제 원칙이다.

다섯째는 모든 무역분쟁은 협의를 통하여 해결하고 특히 관세협상에 있어서는 상호주의에 입각하여 피차간에 관세를 인하한다는 협의의 원칙과 상호주의 원칙이다.

여섯째는 가트회원국은 위와 같은 원칙을 준수해야 하지만 개발도상국가에 대하여는 약간의 예외를 인정한다는 개도국 우대의 원칙으로 개도국이 경제발전에 필요한 한도내에서 무역규제를 허용하며 선진국이 개도국의 경제발전을 지원한다는 차원에서 특혜관세 부과를 인정하며, 개도국이 발전해 감에 따라 그에 상응하는 가트체계에 완전히 부합되도록 하여야 한다는 규정 등을 들 수 있다.

이러한 가트의 기본규범하에서 세계무역은 점진적으로 자유화 되어 왔고, 우리나라를 포함하여 세계 자본주의 경제가 크게 발전되어 왔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80년대 초에 나타나기 시작한 여러가지 무역환경 변화에 의하여 새로운 가트 가입국간의 무역협상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특히 미국의 무역적자 누적과 기타 원인으로 세계무역의 불균형이 확대되고 주요교역국들은 각종 비관세 장벽을 활용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통상문제의 해결을 가트의 체제내에서 해결하기 보다는 양자간의 협상을 통한 해결 또는 지역화를 통한 해결경향이 두드러짐에 따라 보호무역주의 경향이 강화되어 가트체제의 약화를 초래하게 되었고, 또한 가트 창설 당시 당연하게 생각하고 많은 예외를 인정했던 농산물과 더불어 최근 국제간 새로운 거래의 비중이 높아가

고 있는 서비스 관련업종의 진출이나 지적소유권이전 등에 관한 새로운 규범의 설정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이러한 환경변화에 대하여 미국·일본 등 선진국은 '80년대로부터 상품분야에서의 자유무역 질서회복과 농산물, 서비스 등 신분야에서의 무역자유화를 광범위하게 포괄할 새로운 다자간 무역협상 추진문제를 논의하여 오던 중 '86년 9월 우루과이의 폰타델 에스테라는 곳에서 개최된 가트 각료회의에서 다자간 협상개최를 공식 선언함으로써 개시된 것이 바로 우루과이 라운드 협상이다.

우루과이 라운드는 40여년전 가트가 생긴 이래 가트의 여덟번째 다수 회원국간 또는 다자간 협상으로 농산물시장 개방분야를 포함 15개 분야에 대하여 협상이 진행되어 왔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가트가 표방하는 것은 핵심적으로 회원국간에 보다 자유로운 상품교역을 하자는데 있다. 이에 따라 가트가 시작된 이래 지금까지 수차례 협상의제는 주로 관세인하 또는 수입규제 등 비관세장벽 철폐였으며, 이번 우루과이 라운드에서는 시대의 변화에 따라 새로 등장한 국가간 지적소유권의 이전이나 서비스 관련업종의 진출 등 문제가 주요의제로 포함되었다. 관세가 인하되고 비관세 장벽 등의 철폐 그리고 외국이 업종에 뛰어들면 경쟁력이 약한 해당 품목의 산업은 타격을 입게 마련이어서 당사국간의 이해조정에는 오랜 시일이 걸리기 마련이다. 예를 들면 현재 진행중인 우루과이 라운드에 앞서 있었던 일곱번째의 다자간 협상은 일본 동경에서 비롯된 「도쿄 라운드」로 가트의 체약국간 주로 관세를 서로 인하하자는 협정이었으며, 1973~79년간의 협상 끝에 타결된 것이다. 물론 가트규정에는 체약국의 경제여건 이유로 수입제한을 할 수 있도록 여러가지 명시적인 규정들이 있다. 예를 들면 가트의 최초 회원국들은 농산물을 중심으로, 나라에 따라서는 상당수의 품목들을 수입자유화를 유보할 수 있다던가, 지금도 개발도상국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경우처럼 국제수지가 만성적으로 적자를 보일



경우 또한 수입규제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이미 널리 알려졌지만 우리나라는 1986년부터 국제수지가 흑자로 돌아서면서 국제수지 적자를 이유로 더 이상 수입규제를 할 수 없게 되었다. 이러한 가트의 통상관련위원회 판정은 1989년 10월 내려졌으며, 이에 따라 1997년 중반까지 유예기간을 거쳐 완전 자유화를 하도록 되어 있다. 이와 같은 판정이 내려지는 과정에서 우리나라 농민들은 상당히 민감한 반응을 보였으며, 정부에 대하여 개방에 대비한 대책 마련을 촉구하여 왔다.

가트체약국간에 농산물교역도 일반공산품처럼 점차적으로 자유화하여 나아 가자는 논의는 현재 비공식적이거나 진행중인 우루과이 협상 이전에도 있었다. 그러나 농산물의 자유교역문제는 나라에 따라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산업화 과정에서 농업 자체가 여타 분야와 비교하여 생산성의 저하로 인한 농업종사자의 소득보호나 식량안보문제 등은 정치문제화하기 일쑤여서 다자간 협상에서 다루어지기 어려운 과제였다.

이번 우루과이 농산물분야 협상은 구체적으로 높

은 관세와 까다로운 비관세 장벽을 없앨뿐만 아니라 농업보호를 위한 각국 정부의 보조금마저 점진적으로 삭감하여 국제간 농산물을 다른 상품과 마찬가지로 보다 자유롭게 무역을 하자는 것이다. 이번 협상에서 농산물 무역 자유화를 들고 나온 나라들은 농산물 수출국들이인 호주, 뉴질랜드, 알제틴 등 14개국 또는 케언즈 그룹 국가들과 미국이다. 이에 맞서고 있는 국가들은 오랫동안 농업을 보호하여 왔고 수입억제를 위하여 수입과징금, 수출에는 수출보조금을 지급하여 온 유럽공동체 국가들과 우리나라를 비롯 일본, 스위스 등 농업생산구조가 취약하여 정부의 수입규제, 높은 관세의 부과 그리고 이 분야를 보호·육성 또는 농가소득을 보호하기 위하여 정부가 재정적 지원을 하고 있는 나라들이다.

농업협상위원회 의장 드쥬씨 이름으로 마련된 협상 기초안은 보다 자유로운 농산물 무역을 위하여 정부의 국내 보조금과 수출보조금의 점진적 삭감, 수입규제 등 국경조치에 의한 보호장벽의 관세화, 수출보조금 철폐 등 3가지 분야로 되어 있으며, 이를 중심으로 협상이 진행되어 왔다. 지난 10월 1일 까지 가트회원국들은 국내보조금, 수출보조금 지급, 수입규제 등 국경조치 등에 대한 실태를 보고토록 되어 있다. 그러나 보조금을 몇 년을 두고, 그리고 일년에 어느 정도씩 삭감할 것이냐에 대해서는 아직도 어떤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를 비롯 일본, 유럽공동체국가 등 농업구조 취약국들은 농산물수입이 자유화될 경우 농업기반의 붕괴를 우려 어느 정도 농업기반유지는 식량안보, 환경보전, 농촌고용수준의 유지 등 소위 농업의 비교역적 기능의 중요함을 들어 주요 농축산물의 자유화를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는 입장이나 이러한 주장이 어느 정도 받아들여 질지는 의문이다. 지금까지 협상과정을 보면 농업이 비교역적 기능은 거의 묵살된 채 대체로 미국과 유럽공동체간에 보조금 삭감은 몇년간에 어떠한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인가에 대하여서 열띤 논의가 계속되어 왔다.

나. 드류의장 초안

(1) 성격

• 협상의 촉진수단으로만 채택되었으나 향후 협상의 윤곽을 제시 ..

• 국별현황자료(Country List) 제출기한('90. 10. 1)을 명시

(2) 내용

• 첫째, 농산물 교역을 자유화하기 위하여

- 이미 자유화된 농산물의 관세는 현행수준 이상으로 올리지 않도록 가트에 약속하고

- 현재 남아 있는 수입제한 품목은 모두 자유화하여 관세로 전환하되 초기에는 국내가격과 국제가격과의 차이에 해당하는 고율의 관세를 부과토록 하나 앞으로 협상에서 결정되는 기간내에 이를 상당 수준으로 감축함.

• 둘째, 국내농업보조정책을 개혁하기 위하여

- 농산물생산 및 무역에 영향을 주는 국내농업보조정책을 점진적으로 감축하여야 하며,

• 허용되는 정책도 현 수준 이상으로 확대해서는 아니되며, 가트의 감시와 규제를 받아야 함.

• 셋째, 농산물 수출보조금은 다른 보조금보다 더 빠르게 감축하여야 함.

• 넷째, 개도국은 협상결과의 이행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특별대우를 부여함.

- 개도국의 경제발전을 위한 농업개발정책은 허용함. 다만, 국제무역에 영향이 없고 국내가격이 국제가격보다 높지 않아야 함.

• 다섯째, 농업이 비교역적 기능은 고려하되

- 식량안보, 고용안정, 지역개발 유지를 위한 기초 농산물도 국내보조에서는 예외를 인정하지 않고

- 국경보호에서 관세화를 하는 경우에만 최후 쿼타의 확대와 관세상당액 감축폭에서 극히 제한적으로 인정

• 여섯째, 각국이 국내에서 시행중인 모든 보조정책과 관세 및 관세상당액에 관한 자료를 가트에 제출.

2 UR 농산물협상이 양계산업에 미치는 영향

우리나라 양계산업기반은 아주 열악하고 각종 제도의 모순으로 생산비가 가중되어 합리적 양계업을 영위할 수 없는 처지이므로 우루과이 라운드 협상이 진행되는 지난 3년 동안 무려 14만호가 대책없이 양계업을 포기하거나 도산하였으며, 양계업을 천직으로 알고 남아 있는 양계농가도 생업을 포기하거나 마느나 하는 기로에 놓여 있는 실정인 바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한 각종지원 및 제도의 개선없이 현여건하에서 UR농산물 협상 그룹 드류 의장의 초안대로 협상이 타결된다면 다음과 같은 사유로 양계산업기반은 붕괴되어 도산하는 양계농가가 속출할 것임.

첫째, 양계산물의 전면 수입개방으로 국제경쟁력이 없는 국내 양계산물은 가격면에서 수입양계산물과 경쟁을 할 수가 없음(별표 생산성 비교표 참조)

둘째, 정부의 지원하에 이루어지고 있는 수매비축, 가격예시제 등 가격안정대 정책을 쓸 수 없게 되므로 국내 가격안정이 어려워질 것임.

셋째, 양계산물 교역국의 기상 또는 기타 자연적 요인이나 국제적인 양계산물 독과점업체들이 가격조작 등으로 국제 가격불안이 국내에 파급될 경우 국내 가격불안은 더욱 가중될 가능성이 큼.

넷째, 현재까지의 양계산업에 대한 정부의 지원은 피부로 느낄 수 없을 정도로 미미한 편이었으나 이제부터는 시설의 개선 또는 확장 시설의 현대화와 자동화 유통구조개선 등 자금의 파격적인 지원이 절실히 요청되는 바 이에 대한 시행을 할 수 없게 되므로 농가경제의 어려움은 더욱 커질 것이며 양계산업 기반은 계속 위축될 수 밖에 없음.

다섯째, 지금까지의 양계산업의 발전과 소비추세로 보아 정부차원에서 제도를 개선해 주고 자금만 충분히 지원해 준다면 경쟁력을 충분히 갖추어 수출산업으로도 발전시킬 수 있는 단계에 이르렀으나

○계란 생산성 비교

구 분	산 란 수	사료요구율	성계생존율	계란생산비	생산비지수
미 국	278개	2.34	94%	568원/kg	81
일 본	270	2.42	94	833	119
한 국	275	2.38	93	699	100

○닭고기 생산성 비교

구 분	출하체중	출하일령	사료요구율	닭고기생산비	생산비지수
미 국	2.0kg	54일	2.05	565원/kg	73
일 본	2.2	53	2.13	855	110
대 만	2.3	56	2.13	658	84
태 국	1.7	42	2.10	630	81
한 국	1.9	42	1.86	779	100

자료 : 축산시험장(1989)

이에 대한 지원도 제약을 받게 되므로 결과적으로 경쟁력을 잃게 되어 수출산업으로의 육성이 불가능할 것임.

여섯째, 현재까지 수입개방이 유보된 계란중 난황액과 전란액 및 닭고기(HS별 전품목)의 전면 수입 자유화 및 관세 전환이 불가피하여 국내의 가격차에 해당하는 관세 상당액을 부과하여 보호할 수 밖에 없으며 관세 상당액도 일정기간 동안에 감축하여야 하므로 궁극적으로는 관세만으로 경쟁이 불가피하다. 결과적으로 첫번째항의 내용과 같이 생산가격면에서 경쟁을 할 수가 없어 국내 양계산물은 소비의 위축으로 가격이 폭락하여 생산능가는 커다란 피해를 보게 될 것임.

일곱째, 양계산물이 수입이 전면 개방된다면 소비자들의 그릇된 외국산물의 선호풍조로 국내양계산물의 무조건적 기피현상이 야기될 우려가 있음.

3. UR농산물협상에 대한 양계인의 입장

가. “드류” 초안에 대한 협상은 전면 거부한다.

UR농산물 협상 「드류」의장 초안은 우리 양계인에게 생존권을 잃게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어 이 안

대로 협상이 타결될 경우 우리나라 양계산업은 존립기반 자체가 위태로워질 수 밖에 없다. 따라서 우리 15만 양계농가는 「드류」의장의 초안에 따른 향후 협상은 “전면 거부”할 수 밖에 없다는 입장을 분명하게 밝혀 두지 않을 수 없다.

나. UR협상기간 동안 무려 14만호 양계업 포기

86년 12월 당시 28만여호에 달하던 우리 양계농가는 그동안 무려 14만호가 넘게 아무런 대책없이 양계업을 포기하였고 남아 있는 양계농가도 국제경쟁력을 갖추지 못하여 불안한 가운데 생업을 지속하고 있다.

지난 3여년 동안 UR협상에 참여해 오면서 이에 대한 대농민 보호가 없어 이렇다할 국제경쟁력 제고에 아무런 대비책도 강구할 수 없었으며, 늦게나마 양계인들이 혼연 일체가 되어 여러 부문에서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해 심혈을 기울이고 있으나 사실상 생산비를 절감시킬 수 있는 방안들이 각종 제도에 제약을 받아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몹시 당황하고 암울해 있다.

다. “양계산물 비교역적 기능(NTC)에 반드시 포함”

좁은 국토를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자급이 가능한 식량품목은 절대로 보호해야 한다. 농촌지역의 고용증대 등 양계산업이 국가사회에 기여하는 다양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므로 협상에 있어 반드시 비교역적인 기능(NTC=Non Trade Concerns)에 포함되어야 한다. 선진국에서는 UR협상이 시작되기 전부터 이미 자국의 식량확보와 경쟁력 증진을 위하여 막대한 재정지원을 하여 기반조성이 튼튼한 양계산업을 키워온 사실을 외면해서는 안된다.

4. 양계산업의 현황 및 문제점

가. 현 황

(1) 연도별 사육호수 및 수수

연도	'81	'82	'83	'84	'85
호수	628,380	618,463	538,369	367,004	302,775
수수	42,999,172	46,591,640	29,239,436	46,483,161	51,081,237
연도	'86	'87	'88	'89	'90
호수	281,736	268,704	194,047	144,678	
수수	56,094,807	59,323,977	58,464,966	61,688,821	

(2) 연도별 양계산물 생산현황

(단위 : M/T)

	'81	'83	'85	'87	'89
계란	6,270	6,795	7,200	8,590	8,979
육계	90,646	19,871	126,246	140,690	154,929

(3) 연도별 양계산물 가격동향

○계란가격

(단위 : 10개/원)

년도별	월별	2	5	8	11
'90		560	678	499	
'89		590	594	455	590
'88		355	324	328	453
'87		366	416	380	347
'86		392	432	436	461

○육계가격

(단위 : kg/원)

년도별	월별	2	5	8	11
'90		1,163	983	1,0055	
'89		900	779	1,265	973
'88		951	747	1,055	1,094
'87		726	972	602	611
'86		740	957	908	885

(4) 국제 수출입 가격

○계란

(단위 : 원/kg)

국명	수출가격	국명	수입가격
미 국	1,233	미 국	1,033
유 럽	960	유 럽	933
핀 란 드	397	스 위 스	624
사우디아라비아	883	소 련	914
터 어 키	1,443	홍 콩	707
세계평균	961	세계평균	1,007

* 한국 생산비 699원/kg

○닭고기

(단위 : 원/kg)

국 명	수출가격	국 명	수입가격
미 국	827	미 국	1,996
브 라 질	834	멕 시 코	845
네덜란드	1,474	브 라 질	951
헝 가 리	726	소 련	1,164
태 국	1,692	일 본	1,373
세계평균	1,078	세계평균	1,253

* 한국 생산비 779원/kg('88년 기준)

나. 문제 점

(1) 공통사항(계란 및 육계)

○수급 및 가격제도

—계절에 따른 소비의 불균형으로 가격등락이 심함.

-생산기간이 짧아 불황이 오면 생산량이 급격히 감소하고 호황이면 급속도로 증가하여 수급조절에 어려움이 많음.

-유통구조가 전근대적으로 수집상에 의해 가격이 결정되고 유통이 되므로 수집상의 횡포로 생산자는 정상적인 가격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가격을 형성시키고 국내 전체물량을 조절할 수 있는 시장기능(중앙 도매시장)이 없어 수급조절과 가격안정을 기대할 수 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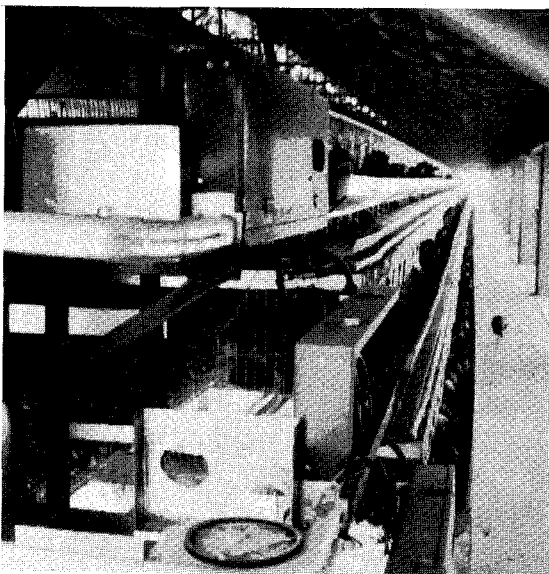
○생산기반

생산시설이 노후하고 재래식으로 생산기반이 취약하여 생산성이 저하되고 있음(전계사의 80% 이상이 무허가로 철제 파이프하우스계사임)

생산시설(계사)의 허가제도의 경직으로 시설개선이 용이치 않아 경쟁력 제고를 기대기 어려운 실정임.

각종 제도의 개선이 없는한 양계업의 지속적인 존속을 기대기 어려운 실정임.

정부의 투융자 지원이 극히 미약하여 향후 생산기반 구축을 위하여 장기간(약 10년간)에 걸쳐 파격적인 지원이 요청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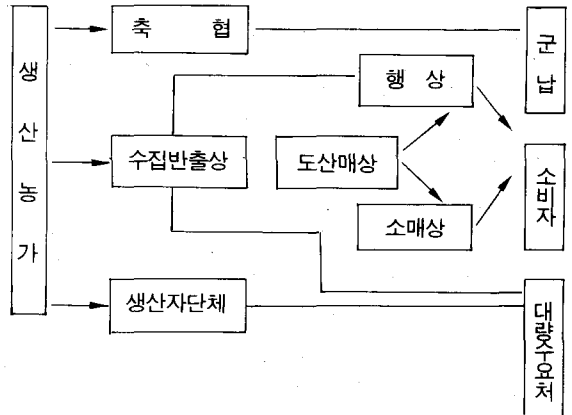
•양계업은 그 규모가 영세한 부업규모가 주류
- '89년 12월말 현재 총 144천가구중 부업규모인 1만수 이하 농가가 143천호로 98.8%를 차지하고 있어 규모를 확대하여 전업화하지 않으면 경쟁력을 갖추기 힘든 실정임.

(2) 계란부문

○복잡한 유통과정으로 산지와 소비자가격 차이 큼

• 일반적인 유통경로는 생산농가→수집반출상(도매상)→도산매상→소매상→소비자

• 복잡한 유통과정으로 인하여 산지가격과 소비자 가격의 차이가 큼



-계란의 산지 및 소비자가격

(단위 : 원, 대란 10개당)

구분	'81	'83	'85	'87	'89
산지 가격	391	485	475	392	554
소비자가격	495	622	566	492	648
마진율(%)	26.6	28.2	19.2	25.5	17.0

* 자료 : 축협 조사 계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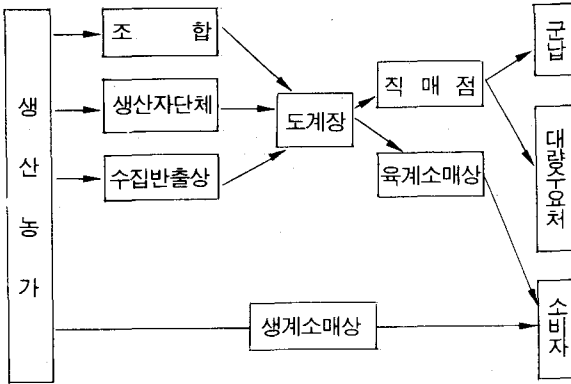
- 월별로 계절에 따른 가격의 등락폭이 큼
- 하절기 및 비수기 계란가격 대폭 하락

(3) 육계부문

○복잡한 유통과정으로 산지와 소비자 가격 차이가 큼.

*** 육계의 유통경로**

- 생계의 경우 생산농가→모집반출상→소매상→소비자의 경로가 주종
- 도계품은 생산농가→수집반출상→도계장→소매상→소비자의 경로가 일반적인 유통경로



○육계 가격 불안정

- 연도별 가격 등락폭이 큼
- 연말연시 및 하절기의 성수기 육계가격 대폭 상승

5. UR농산물협상과 관련하여 국가차원의 양계산업보호의 필요성과 방향

가. 필요성

- (1) 우리나라 양계산업은 해방이후 오늘에 이르기까지 국가의 별 지원없이(물론 지원이 있기는 하였으나 양계인이 피부로 느낄 수 없을 만큼 미미한 지원이 있을 뿐임) 자력으로 성장하여 국민의 건강식품을 공급하는데 크나큰 기여를 해 왔음.
- (2) 육류의 소비성향이 적육에서 백육으로 전환하는 추세(세계적인 추세로)로서 우리나라에서도 1인당 닭고기 소비량이 대폭 증가(75년 대비 89년 235%

증가하여 2001년에는 1인당 소비량이 6.6kg으로 증가할 전망이다)하고 있음.

(3) 가격면이나 영양가면에서 볼 때도 타육류에 비해 영양가 높고 값이 싼 양계산물을 국민에게 많이 공급할 수 있도록 양계산업을 보호 발전시켜 나가야 할 것임.

• 육류별 영양가 대비표

영양소	구분	계 육	달걀(전란)	우 육	돈 육
수분		73.7	74%	69.5	69.5
단백질		23.4	13%	21.5	19.5
지방		1.9	11%	8.0	9.5
무기질		1.1	0.9	1.0	1.0
100g Kal		117	159.8	169	170

• 1,000원으로 구입할 수 있는 육류량

(1990. 10. 29 현재)

구분	총량(g)	단백질량(g)	비고
닭고기	400	92	
돼지고기	187	36	
쇠고기	85	18	
계란	70	9.1	

(4) 양계산업은 국가차원의 보호를 한다면 경쟁력 있는 산업으로 발전할 잠재력을 갖고 있음.

(5) 유럽 EC국가 및 미국 선진 외국도 양계산업 보호를 위하여 육성 보호대책을 제도화하고 있으며 식량안보차원에서 자급생산에 주력하고 있음.

(6) 15만 양계농가 및 그 가족과 종사자들이 생존권을 보호하여야 할 것임.

나. 방 향

정부는 양계산업을 국가 중요산업으로 육성하겠다는 의지를 갖고 양계산물을 NTC 품목으로 적용을 받아 GATT BOP졸업시 부여된 수입자유화 유예기간(1997년)을 그 이상으로 연장 되도록 보장을 받아 다음과 같은 정책의 시행으로 국제 경쟁력에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여야 할 것임.

(1) 가격안정을 위한 수매비축사업의 제도화—가격안정대 설치운영

(2) 사육기반 구축을 위한 제도의 개선

• 건축허가 농지전용허가, 산림훼손허가 등 양계장 신축에 따른 모든 허가제도를 완화하여 가능한 신고로 갈음토록 조치

• 무허가축사 및 불법 전용농지의 양성화 조치

• 각종 허가신청시 주민동의서 첨부제도 폐지(각종 법규에도 없는 사항을 지방행정기관에서 일방적으로 요구하고 있어 양축가는 커다란 피해를 보고 있음)

(3) 생산비를 가중시키는 제도의 개선

• 배합사료, 축산기자재의 부가가치세 철폐

• 사료원료, 축산기자재 등의 관세면세

• 축사설치를 위한 농지전용 또는 산림훼손허가시 대체농지 조성비 또는 대체 조립비 전액 면제

(4) 시설개선 및 확장과 현대화를 위한 자금의 과격적 지원

수입개방 유예기간(향후 10년)까지 연차적으로 장기(10~20년) 융자지원으로 현존 부업 규모를 전업 규모(50,000수 이상의 현대화 시설을 갖춘 농가)로 육성

(5) 은행 금융제도의 확충

정책자금 또는 농축협이 지원자금 만으로는 소기

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으니 은행융자제도를 개선하여 축산업자도 일반시중은행과 중소기업은행 등 특수은행에서도 융자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

(6) 유통구조개선으로 수급조절 기능강화

• 생산자를 주축으로 하는 계열주체의 육성 및 지원

• 대도시 축산물 도매시장 내에 공판장 설치 및 대규모 가공 비축시설 설치운영

(7) 수출 보조금의 지급

양계산물 수출농장을 지정 육성하여 매년 정기적으로 수입물량과 대등한 물량을 수출토록 하고 수출에 따른 적자는 양계산물 수입관세 및 부가금 재원으로 지원하고 부족액은 국고에서 보전

(8) 종계개량 및 우수 국산계 개발 보급

• 일반검정 및 능력검정 강화: 저능력 종계유통 방지

• 국산계 개발전문업체 보호육성

—국산계 개발자금 지원: 국고 또는 진흥기금 보조

—세제상 특혜—국산계 개발보급에 따른 투자액에 대한 세액 전액 면제

—국공유지 일정기간 무상임대 또는 불하

—육종농장의 법적 보호: 보호구역 설정

—우수 품종 개발자에 대한 포상금제 실시: 능력검정 결과에 의거 판정

• 국산계 개발협력회 구성 및 운영

—구성: 정부, 학계, 연구기관, 생산자단체, 개발업체

—업무: 정보교환, 유전자원 교환개발 등 보급방법 등

(9) 양계전문연구소 설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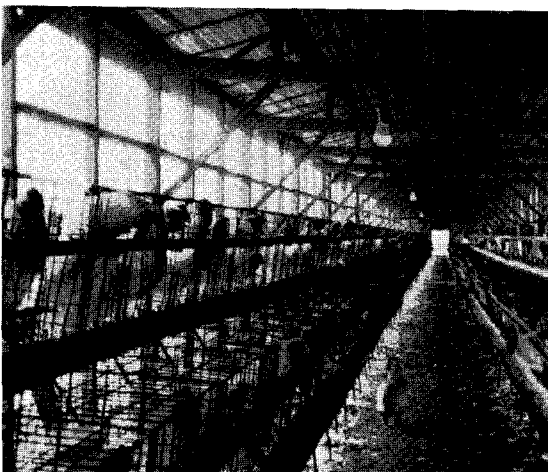
• 사료 및 사양(경영포함) 시험연구 및 검사

• 육종시험연구 및 원종(유전자원) 보관

• 위생방역 시험연구 및 검사

—양계질병

—각종 예방대책 및 검색



- 양계산물의 각종 위생검사
- 사료위생 : 시설, 원료, 운반수단 등
- 양계산물 통계조사
- 종계, 양계사육실태 및 동향조사
- 부화(발생, 입추) 실태조사
- 사육추세 및 산물시세조사
- 수요량조사 및 전망분석
- 생산비조사 등 양계산물에 필요한 모든 통계 조사업무

(10) 국토이용계획협상 양계집단 조성지대 지정고시 및 양계산업육성보호법 제정

6. 향후대책

UR농산물 협상 「드쥬」 의장의 초안을 근거로 어떠한 선에서 수정이 되고 최악의 경우 원안대로, 타결이 된다 하더라도 정부, 생산자단체, 생산자가 삼위일체가 되어 다음과 같이 역할을 분담하여 슬기롭게 대처함으로써 국제화시대에 걸맞는 경쟁력 있는 양계산업으로 발전시켜 나갈 계기를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가. 정부의 할일

- (1) 양계산업발전의 저해요인이 되는 각종제도의 개선
- (2) 양계기반구축 및 유통구조개선 등 구조조정을 위한 자금의 파격적인 투자
- (3) 양계산업 육성보호법 제정 시행

나. 생산자단체가 할 일

- (1) 정책개발 및 대정부 건의
- (2) 관측사업을 통한 자율생산조절유도로 가격안정방안 강구
 - 양계사육동향 및 전망 등 매분기별로 분석 공표
 - 종계등록 강화

- 불황 예고제 실시로 자율생산조절 유도
- (3) 생산성 및 상품성 향상과 생산비 절감을 통한 국제경쟁력 강화방안 강구를 위한 지도사업 및 국내외 정보전달사업의 강화
 - (4) 양계산물 소비증대 운동전개
 - 소비자 교육
 - 양계산물의 올바른 지식 홍보(T·V, 라디오, 신문, 잡지, 세미나)
 - 요리강습회 및 시식회 개최
 - 다양한 신제품 개발보급
 - 다양한 요리법 개발보급 (개발장려금, 포상금 지급 요리솜씨대회 개최)
 - 소비처개발-학교, 공장, 각종 직장 등 단체급식
 - 계란 및 닭고기 많이 먹기운동 전개
 - (5) 수입양계산물 안사먹기운동 및 무분별한 양계산물·수입판매업체 제품의 불매운동전개
 - 소비자단체와 연계추진
 - (6) 산업피해 구제 또는 반담핑 코드 활용
 - (7) 양계산업발전 특별대책위원회 구성운영
 - (8) 자조금사업 시행

다. 생산자(양계농가)가 할일

- (1) 새로운 사육 및 경영기술의 도입으로 생산성 향상에 더욱 노력
- (2) 시설개선과 자동화로 생산비 절감에 더욱 노력
- (3) 양계산물의 위생적인 처리 그리고 품질의 고급화 및 우리 입맛에 맞는 양계산물의 생산과 공급으로 소비저변 확대를 위하여 더욱 노력
- (4) 유통구조개선과 유통질서 확립에 적극 참여
- (5) 수요에 적응할 수 있는 자율생산조절 능력을 발휘하여 양계산물 가격안정에 더더욱 노력
- (6) 양계인의 권익을 스스로 보호하고 신장시키기 위하여 생산자 조직활동에 적극 참여
- (7) 자조금사업 참여